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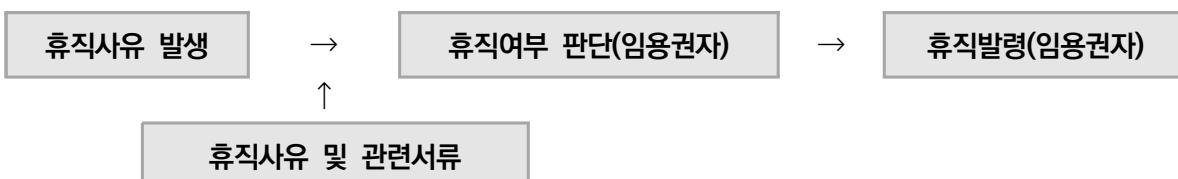
- 마) 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. 다만,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: 1년 이내(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)
- 바) 배우자가 외국 근무를 하게 되거나 가)에 해당하게 된 경우: 3년 이내(3년 연장 가능. 단,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, 해외유학·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)
- 사)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·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: 1년 이내(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)

#### 다. 휴직의 효력

- 1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3조
  - 가)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
  - 나)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 신고 → 지체 없이 복직조치
  - 다)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직신고 → 당연복직
- 2)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8조(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)
  - 가) 신체상·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(단, 공무상 질병인 경우: 봉급의 전액 지급), 불임·난임으로 인한 휴직
    - (1)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: 봉급의 70% 지급
    - (2)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: 봉급의 50% 지급
  - 나)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 휴직: 봉급의 50% 지급 가능
  - 다)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7조 제3항에 따라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), 나)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
  - 라) 가), 나)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함

#### 라. 휴직절차

- 1) 직권휴직



- 2) 청원휴직

